

[별지 제24호서식의(가)] <개정 2005.8.4> (규칙 제38조제1항관련)
한국방송공사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의 지정통보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7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지역방송국명	구 분	경력방송을 행할 선거구명	비 고
	텔레비전		
	라디오		
	텔레비전		
	라디오		

한국방송공사사장 인

주 :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합니다.

[별지 제24호서식의(나)] <개정 2005.8.4> (규칙 제38조제2항관련)

경력방송원고(텔레비전용·라디오용)제출서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(○○선거구)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73조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방송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1. 기 호
 2. 소속정당명
 3. 후보자성명 (한자 :)
 4. 생 년 월 일 생()세
 5. 직 업
 6. 학 력
 7. 경 력
- 덧붙임 : 사진 매

년 월 일

제출인	○ ○ 당	인
	대표자 ○○○	인
	후보자 ○○○	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

1. 사진은 텔레비전방송용이며 5센티미터×7센티미터의 천연색사진으로 하되,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하며, 그 매수는 텔레비전방송시설의 수에 상당하는 매수이어야 합니다.
2. “(○○선거구)”란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[별지 제24호서식의(다)] <개정 2005.8.4> (규칙 제38조제6항·제39조제2항관련)
한국방송공사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(38조제6항)·(제39조제2항)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선거구명	방송시설명	방송일시	소요시간	비 고

한국방송공사사장 인

주

1. “선거구명”란은 대통령선거시는 작성하지 아니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“방송시설명”란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방송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“방송일시”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